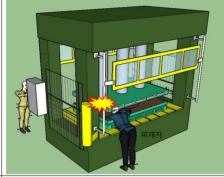
프레스 점검 중 금형사이에 끼임

재 해 개 요

2018년 1월 피재자가 생산과장에게 작업지시를 받던 중, 작업장 내 프레스에서 이 상소음이 발생해 이를 점검하고자 해당 프레스의 위험점에 신체를 접촉시켰으나 생산과장은 확인하지 않고 프레스를 작동시켜 피재자의 머리가 금형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한 끼임 재해임.

재해상황도





< 프레스 전면 >

< 재해상황 >

재해발생상황

- 기인물(프레스) 작동
- 피재자는 생산과장에게 당일 작업내용 등에 대한 작업지시를 받던 중 작업장 내 프레스에서 이상소음 감지함,
- 피재자와 생산과장은 해당 프레스의 작업을 중지시킨 후,
- 피재자는 프레스 후면부에서 금형 안쪽으로 상체를 숙이고 금형을 확인함,
- 생산과장은 프레스 조작 패널로 이동해 운전모드를 자동에서 수동 으로 전환하고 금형[수동고속하강] 버튼을 눌러 작동시험을 실시함,
- 이후 프레스의 상부금형이 하강하여 피재자의 머리가 금형사이에 협착되어 끼임 사고가 발생함.

재해발생 원인

- 프레스 정비작업 중 운전(가동)
- 프레스 정비작업 중 안전블록 미사용
- 프레스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
- 프레스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미실시

동종재해 예방대책

O 프레스 점검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

- 프레스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프레스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,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

O 프레스 정비작업 중 안전블록 사용

-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프레스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로크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

○ 프레스 작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

- 해당 프레스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**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**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

O 프레스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

- 프레스작업은 금형사이에 협착 및 금형파손으로 인한 파편에 맞음, 금형을 부착·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 등에 위험성이 있어 작업 전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,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